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1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3월 27일, 이주희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2026년 3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6. 9. 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심사소위
(2026. 9.16.)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6. 9.22.) 상정, 소위심사
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이주희의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으로 대표되는 나노기술은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분야로,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서는
정부가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 양

성, 연구성과 실용화 및 기업 창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계 등 민간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우수 나노기술인력의 공급, 세제상·금융상의 지원 및 우선구매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 방안이 부재하여 나노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최종적인 사업화 성과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정부가 나노기술 분야의 산학연 정보·인력교류 및 협동 연구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공공 공동출자 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 민간의 기술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나노기술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도전적 연구환경 조성 등 정부 과학기술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타 법률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등 기존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대훈)

○ 다른 과학기술 특정 분야 진흥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과 유사하게 “나노기술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참고: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

시 [별표]) 상 국가전략기술의 분야 및 중점기술에는 반도체 ·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등은 직접 명시되어 있으나, ‘나노기술’이라는 분야명 자체는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개정안의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나노기술 분야”라는 표현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선정되는 것임을 고려하여, “나노기술 분야”를 “나노기술과 관련된 분야”로 수정함으로써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 있음.

○ 안 제8조제5항은 지원대상을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 공동출자 주체로 공공기관 외에도 출연연구기관, 직할기관 등이 포함되는지 불명확함.

- 따라서 공동출자 주체의 범위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최형두)

다른 과학기술 분야 입법례와 유사하게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보충 적용 방식으로 수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선정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도전적 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9.

제 안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다른 과학기술 분야 입법례와 유사하게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보충 적용 방식으로 수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선정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도전적 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의2 본문 중 “이 법은 나노기술 연구개발 촉진에”를 “나노기술의 육성에”로, “그 밖의 다른”을 “다른”으로, “우선하여 적용한다”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안 제6조제7항 중 “특별법」에”를 “특별법」 제8조에”로,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나노기술”을 “선정된 국가전략기술 중 나노기술과 관련된”으로 한다.

안 제8조제5항 중 “등이”를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u><신설></u>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u>이 법은 나노기술 연구개발 촉진에 관하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 육성 주체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u>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u>나노기술의 육성에-----다른-----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서 삭제></u>
제6조(연구개발의 추진) ① ~ ⑥ (생략) <u><신설></u>	제6조(연구개발의 추진)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도전적 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하	제6조(연구개발의 추진) ① ~ ⑥ (개정안과 같음) ⑦ ----- ----- ---<u>특별법</u>」 제8조에-----<u>선정된 국가전략기술 중 나노기술과 관련된</u>-----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나노기술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선정된 국가전략기술 중 나노기술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도전적 연구개발(「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말한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정부는 민간 부문의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나노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실증·상용화 등을 위하여 민간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6조(연구개발의 추진) ① ~ ⑥ (생 략) <u><신 설></u> 제8조(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① ~ ③ (생 략) <u><신 설></u>	<u>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나</u> <u>노기술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u> <u>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u> <u>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u> <u>하는 바에 따른다.</u> 제6조(연구개발의 추진)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u> <u>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u> <u>따라 선정된 국가전략기술 중</u> <u>나노기술과 관련된 분야에 대</u> <u>한 도전적 연구개발(「과학기</u> <u>술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u> <u>도전적 연구개발을 말한다)을</u> <u>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u> 제8조(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정부는 민간 부문의 나노기</u> <u>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u> <u>여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u> <u>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인력교</u> <u>류 및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u> <u>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u>

<u><신 설></u>	<u>한다.</u> <u>⑤ 정부는 나노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실증·상용화 등을 위하여 민간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	--